

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9월 19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제한 지역

구분	제한지역	제한면적(m ²)	사업방식(후보지)
1	송인동 1169 번지 일대	14,153	공공재개발(주택정비)
2	연건동 305 번지 일대	10,047	공공재개발(주택정비)
3	송인동 725 번지 일대	8,652	역세권장기전세주택(도시정비)

2. 제한 근거 및 사유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

나.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.

3. 제한 대상

가.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
나. 건축물대장 전환 및 분할
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다. 토지의 분할

4. 제한제외 대상

가.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재축,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나.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5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

※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·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,
관련 규정에 따른 후보지 제외, 입안 중단·취소 결정 시 즉시 해제

6. 관계도면: 첨부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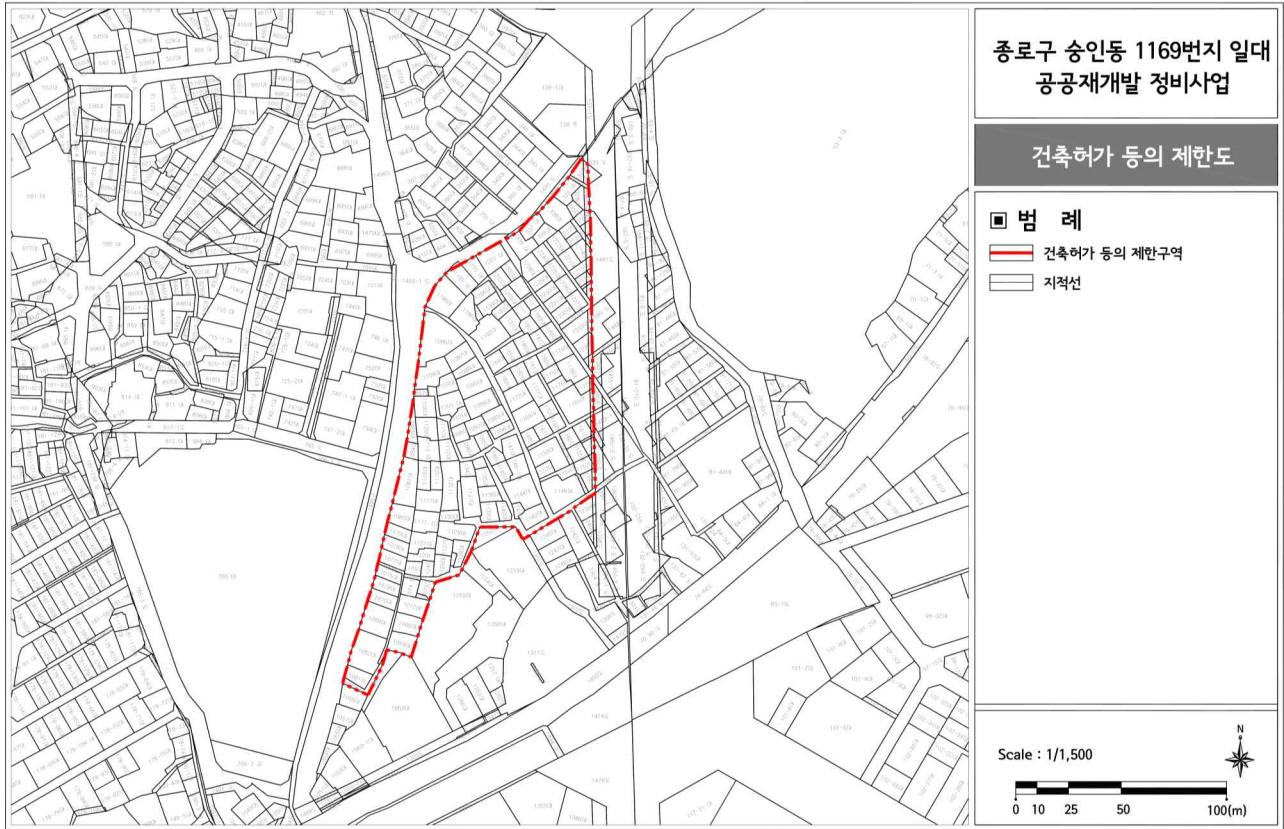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은 측량 등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7. 안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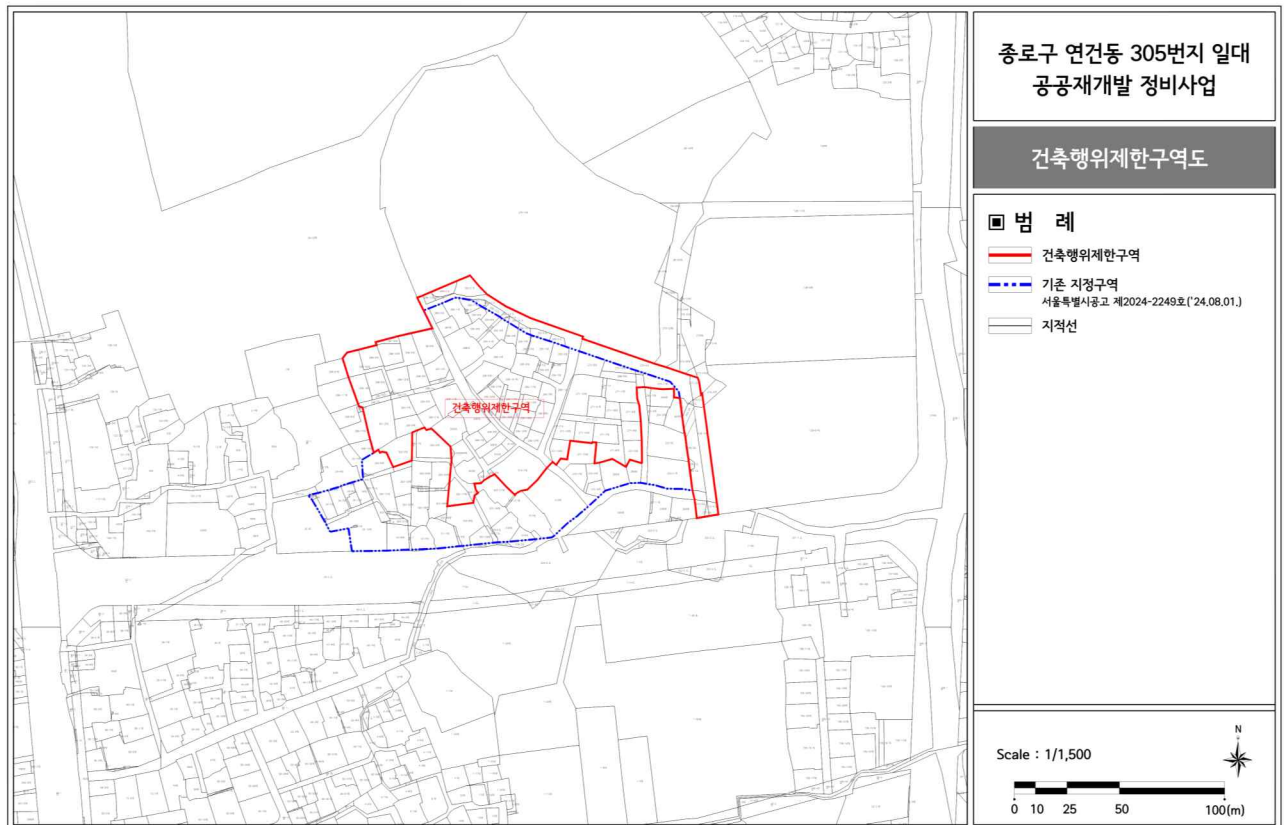
－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92, 2694)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첨부] 관계도면(지형도면)

1. 송인동 1169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 행위제한 구역도



2. 연건동 305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 행위제한 구역도



3. 송인동 725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설사업 후보지 행위제한 구역도

